

경운대학교 스토리라이팅센터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해 경운대학교 스토리라이팅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두며, 제반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 벽강교양대학 내에 둔다.

제3조(구성) ① 본 센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센터에는 센터장, 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글쓰기 상담사, 첨삭요원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글쓰기 교육 및 상담
2. 글쓰기 상담실 운영 및 첨삭지도
3. 글쓰기 교육에 관한 각종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
4.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
5. 기타 센터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벽강교양대학장, 학부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센터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
2.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작성
3.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7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와 국고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8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